



“자원순환을 넘어 에너지기업으로”

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
KOREA RESOURCE-RECYCLING ENERGY MUTUAL-AID ASSOCIATION

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
Korea Industrial Waste Landfills Association

수 신 전 조합원사 및 매립협회 회원사 대표이사
[대표이사 메일 송부 병행문서]
참 조
제 목 녹색기업 지정 제도 안내

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우리 조합·협회에서는 환경부의 「녹색기업 지정 제도」와 관련하여 소각·매립시설 업계의 최초 도입, 업계 이미지 개선 효과 등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불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이 있으신 조합원사 및 회원사에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불 임 : 녹색기업 지정 제도 안내 1부. 끝.

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사장
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회장

담 당 김 찬 정책기획팀장 한 인 성 전 무 장 기 석 부이사장 이 가 희

이 사 장
회 장

협조자

시행 한공조 2023 - 351호 (2023. 12. 18) 접수
우 04508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 50-1(만리동1가, SKY1004빌딩) 13층 / www.krema.kr
전화 02-718-7900 전송 02-718-7171 / krema@krema.kr / 비공개



녹색기업 지정 제도 안내

1 개 요

- **(정의)**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,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, 제품의 환경성 개선,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제조 및 비제조(공공·사회서비스 등 포함) 기업
- **(자격요건)** 최고경영자의 녹색경영 의지를 바탕으로 전 조직원의 참여 하에 **오염물질의 적정처리** 뿐만 아니라 **사전예방적 환경관리**와 **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기업**
 - ※ 녹색기업 지정 사업장은 103개(삼성전자, 전주페이퍼 등) / 소기업체 없음 / 한일시멘트는 '20.9.15 녹색기업 지정 후 '22.12.14 반납(환경법 위반 등)
 - ※ 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른 허가취소·영업정지 또는 조치명령, 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 따른 개선명령·조업정지명령·허가취소처분·과징금부과처분·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등의 경우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

2 지정 시 혜택

☐ 환경부(지방환경청) 교류 활성화

- 매년 녹색협의회, 간담회 등 지방환경청장의 만남을 통해 정보 교환 및 공무원과의 유대강화

☐ 지도 점검 완화 및 면제

- 폐기물 및 화학물질 관리, 악취방지, 토양환경 보전 등 환경 관련 11개 법률상 일부 항목에 대한 보고·검사 면제

☐ 사업장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및 기술지원

- '23년 환경부에서 녹색기업·친환경 설비투자(1,067억원) 및 정책융자(3.7조원)를 통해 낮은 금리 지원

라 기업 가치제고

- 녹색기업 현판 수여에 따른 기업 친환경 이미지 홍보에 기여
- 매년 우수 녹색기업 시상식 개최(환경부장관상, 표창장 등)

< 녹색기업 현판 수여 예시 >



삼성SDI(주)·삼성디스플레이(주) 천안사업장



LG이노텍(주) 구미 1공장

3 지정 절차

- 신청기업은 지정신청서와 **녹색경영보고서**를 관할 환경청에 제출하여 사전자격심사,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지정(3년 단위 재지정 심사)
- ※ (녹색경영보고서 포함 사항) 사업 활동의 개요, 녹색경영체제 구축 현황, 녹색 경영 목표 수립 및 기업간 협력, 자원·에너지 관리 현황, 온실가스·환경오염 관리 현황, 녹색제품·서비스 개발 및 사용현황, 녹색경영성과 현황 등

